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03
------	------

2021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 다. 상정결과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6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 유연식)

가. 제안이유

-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콘셉트로 연중 살아 숨 쉬는 마을 단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설명 : 돈의문박물관마을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7-24 외 96필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9,770 m^2 / 연면적 9,209 m^2 (41개동)
 - 전시관, 시민체험관, 공연장 등
- 개관일자 : 2019. 4. 6. (새단장 개관)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2.2월.~2025.1월. (3년)
- 위탁업무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시·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돈의문박물관마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마을 활성화 주도
 - 마을의 역사성 보존 및 문화·예술이 접목된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부합하는 사항 운영
- 예산요구(안) : 2,64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1년 단위의 대행사 교체로 인한 운영 경험의 사장으로 비효율 발생
- 운영대행·시설관리의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운영상의 혼선 초래

- 마을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민간위탁 전환 위한 기반 마련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민간위탁 사무내용)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콘셉트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운영중인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문화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9. (생략)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민간위탁 계획은 2021년 4월에 수립되었고, 5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을 통보 받은 바 있음.

<2021년 제3차 민간위탁 운용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돈의문박물관마을	사무/공모	3년	적정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공모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 돈의문박물관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1. 4월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상정	'21. 5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제301회 정례회)	'21. 6월
○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제303회 정례회)	'21. 12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21. 12월
○ 계약심사 및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22.1월
○ 수탁기관 운영 개시	'22. 2월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26억원 규모임.

< 서울시 돈의문박물관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명 : 돈의문박물관마을▶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7-24 외 96필지▶ 시설규모 : 대지면적 9,770㎡/ 연면적 9,209㎡(41개동)▶ 주요시설 : 전시관, 시민체험관, 공연장 등▶ 위탁기간 : 2022.2월~2025.1월(3년)▶ 예산요구(안) : 2,640백만원▶ 위탁사무<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시·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돈의문박물관마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마을 활성화 주도- 마을의 역사성 보존 및 문화·예술이 접목된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부합하는 사항 운영
--

- 2019.4.6. 개관한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운영대행사(용역/現(주)오렌지오션)와 시설관리대행사(대행/現 SH)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운영대행사가 교체되어 운영 경험이 사장되고, 운영대행과 시설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운영상의 혼선 초래 등 비효율적인 업무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집행부는 마을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함.

-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운영하는 용역의 경우 주로 단순 지원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부수적인 사무 수행은 용역 방식이 적정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대행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1)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는 경우2)이므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라. 그 외 검토사항

- 돈의문박물관은 주변에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장, 덕쿠사 등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하고, 서울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아주 높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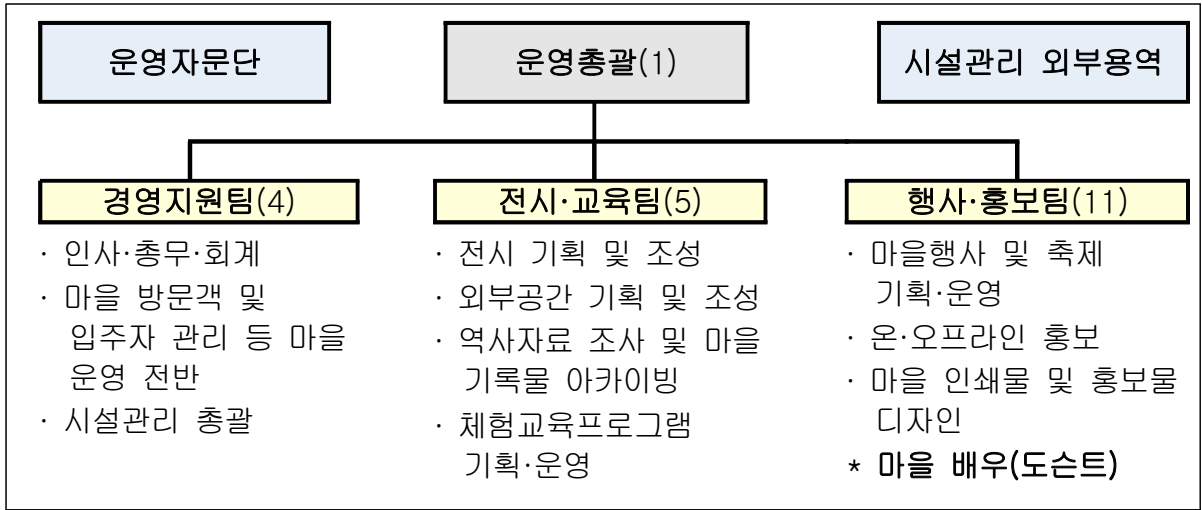
< 돈의문박물관마을 전경 >



-
- 1)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2)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1, p.3

마을전시관 20개소, 체험교육관 8개소, 마을창작소 6개소, 기타 6개소 등 총 41개소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 15명의 인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각 팀의 팀장을 충원하여 총 21명으로 늘어날 계획임.

<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직 구성계획(안) >



-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운영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동 주요시설 일부를 여전히 도시공간개선단 외 여러 실국에서 사용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타실국 상주 현황 >

《 이 전(예정) 》

- ① 디지털심사장 (도시공간개선단)
- ② 서울도시건축센터(도공개선단)
- ③ 열린위원회(도시계획국)

《 잔 류 》

- ④ 돈의문역사관(서울역사박물관)
- ⑤ 돈의문AR체험관(관광체육국)
- ⑥ 도시재생이야기관(도시재생실)

집행부는 2단계 준공시점까지 각 부서의 역할이 있어 일원화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서울 도시건축센터'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서울 도시건축센터 예산 현황 >

사업명	2021년 예산	사업내용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571,473천원	·권역별 도시기록화 용역 ·대시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민참여 정책연구 공모 용역 ·관련자료 구입 및 인쇄 등 ·아카이브 등 센터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전기료 및 공과금 등

- 돈의문박물관의 2019년 개관이후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16,070명,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58.1%가 줄어든 174,374명으로 집계되었고,
- 2020년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돈의문박물관은 체험교육관·마을창작소 등 입주단체와 협업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홍보채널이 3개 더 늘어나고 유튜브 구독자가 4명에서 4,72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59명에서 3,150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2019년 vs 2020년 홍보 채널 현황 >

구분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증가율	증가건수
유튜브	구독자	4	4,710	117,750%	+4,706명
	조회수	379	56,757	14,975%	+56,378건
인스타그램	팔로워	459	3,150	686%	+2,691명
	해시태그	9,053	15,008	66%	+5,955건
카카오톡채널	팔로워	-	1,141	-	신규운영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판매수량	-	1,700	-	신규운영
	찜하기(구독자)	-	257	-	신규운영

이 중 네이버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입주자들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재 등록 상품수는 4건으로 미미하나 입주자들의 이색적인 콘텐츠를 잘 활용한다면, 돈의문박물관과 입주자들의 상품 홍보와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판매 예시 >



-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민간위탁비는 26억 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개관이후 매년 약 2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 돈의문박물관마을 대행비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합계	1,772,094	2,088,284	2,218,111	2,180,600	2,248,108
인건비	177,618	249,841	475,319	419,607	461,224
운영비	34,000	61,423			29,400
시설관리비	417,390	472,269	618,111	580,600	618,111
사업비	859,300	966,219	772,147	827,859	765,153
대행료	160,636	191,622	207,079	207,079	226,039
부가가치세	123,150	146,910	145,455	145,455	148,181

<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금 예산(안) 세부내역 >

구 분		금 액	비 고	
민간위탁금		2,310,000	'22.2~12월(11개월) 민간위탁 운영 기준	
인건비		845,000		
	급여	695,000	21명 (운영총괄 1명, 팀장 3명, 선임급 4명, 주임급 13명) ※ '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예상액(10,800원) 반영	
	4대보험료	68,000		
	퇴직총당금	55,000		
	기타수당	27,000		
운영비		870,000	※ 경찰박물관 추가 관리로 인한 비용 증가분 반영	
	시설유지관리비	735,000	시설관리, 보안·경비, 환경미화 전문 외부용역	
	공공운영비	80,000		
	자산취득비	16,000		
	소모품비	4,000		
	여비 및 기타	35,000	교육비, 우편통신비, 유인물비, 심사비 등	
사업비		595,000		
	전시 기획·운영	259,600	명인, 시민 갤러리 전시 교체	95,000
			전시관 리뉴얼	95,000
			온라인 전시관 운영	40,000
			전시소품비	29,600
	축제 및 행사	182,000	절기, 월별 행사	11회 44,000
			주말 행사	22회 55,000
			소규모 일일행사	120회 75,000
			플레이 도슨트 프로그램	4,500
			마을 캐릭터 스탬프 투어	3,500
			홍보 컨설팅	1회 15,000
	홍보·이벤트·디자인	90,000	기획홍보(바이럴)	4회 15,000
			인쇄물 제작	20회 30,000
			온라인 이벤트	20회 30,000
			오프라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	36,000
	체험교육프로그램	63,000	온라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	27,000
			관람객 편의시설 운영	400
	관람객 편의시설 운영	400	마을 입주자 관리	400
민간위탁사업비		330,000		
	공간조성 및 물품구입비 등	330,000	전시관 인테리어, 외부 익스테리어, 물품구입	

민간위탁금 예산(안) 중 전시교체, 전시관 리뉴얼 등 하드웨어적인 전시 기획·운영비가 2억 6천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43.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운영방향은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되는 '체험 중심' 전시·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라 하면서도 체험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전시 기획·운영에 예산비중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면적(9,209㎡)에 舊 경찰박물관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간위탁금 예산(안) 세부내역 운영비 중 시설유지관리비에는 ‘舊 경찰박물관’을 관리하기 위해 미화 인력 6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편성되어 있음.

시설개요	시설명	돈의문박물관마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7-24 외 96필지		
	시설규모	대지면적 9,770㎡ / 연면적 9,209㎡ (41개동)		
	시설용도	전시관, 시민체험관, 공연장		
	준공일자	'17.8.22.	개관일자	'19.4.6.
	이용대상	서울시민, 창작가	수용인원	556천명/년(추산)
	보유장비 현황	조명·음향·영상장비, 공방 공구, 공간별 가구 및 전자제품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시 위탁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할 경우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위탁사무에 명시되지 않은 경찰박물관의 추가 관리비(175백만원)³⁾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1단계(현 돈의문박물관마을)와 2단계(舊 경찰박물관 철거 및 개축, 시민사체험관 조성, 소공원 조성)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권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종로구간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토지무상사용승낙서('18.5.17)에 따르면 사용승낙기간은 조성사업 준공까지로

3) 현재 시설 유지관리비 560백만원 + 舊 박물관 미화 인력 6명 인건비 175백만원 = 735백만원

○ '18.05.04 서울시-종로구 합의내용

< 1단계 >

- 市 : 조합의 소유권 정리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협조
- 區 : 돈의문 박물관 마을 운영 협조
 - 돈의문 박물관내 기존건축물 등 소유권 이전(조합→시)
 -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조합→시)

< 2단계 >

- 토지소유권은 추후 서울시와 종로구 협의하여 결정

○ 이후 진행사항

-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조합→區→市, '18.5.17.)
- 기존건축물 등 소유권 이전 추진 중 : 이전대상 47개소 중 45개소 완료
 - ※ 잔여 2개소 중 1개소(신문로2가 7-50, 조합측과 민사소송 중)은 협의 이행 촉구 중이며, 경찰청 건물은 돈의문1구역 준공시점 이전 가능

○ 향후계획

- 잔여 건축물 소유권 이전 추진 및 돈의문1구역 준공 이전 토지소유권 정리
 - ※ 토지소유권 정리 관련 서울시-종로구간 이견이 있어 지속 협의 진행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 주변에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하고, 서울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아주 높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체험 중심’이라는 운영방향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운영의 묘를 살려 전시에 치우치지 보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각각의 공간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03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콘셉트로
연중 살아 숨 쉬는 마을 단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돈의문박물관마을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7-24 외 96필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9,770㎡ / 연면적 9,209㎡(41개동)
- 전시관, 시민체험관, 공연장 등
- 개관일자 : 2019. 4. 6. (새단장 개관)

다. 위탁기간 : 2022.2월.~2025.1월. (3년)

라. 예산요구(안) : 2,640백만원

마. 위탁사무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시·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돈의문박물관마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마을 활성화 주도
- 마을의 역사성 보존 및 문화·예술이 접목된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부합하는 사항 운영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1년 단위의 대행사 교체로 인한 운영 경험의 사장으로 비효율 발생
- 운영대행·시설관리의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운영상의 혼선 초래
- 마을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민간위탁 전환 위한 기반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민간위탁 사무내용)

나. 예산조치

- '22년 예산 편성필요

다. 합 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공간운영팀 우민경 (☎ 2133-2529)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